





## 제2조 면책 등

- (1) 은행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팩시밀리 신청서의 원본을 징구하거나 그 존재사실을 거래처로부터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은행이 팩시밀리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 또는 서명을 거래처가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수입거래에 관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은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인장이나 서명의 도용,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중대한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2) 거래처는 팩시밀리 신청에 따른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해당 팩시밀리 신청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3조 적용약관

은행과 거래처는 팩시밀리 신청에 따른 수입거래에 대해서는 이 약정서에 추가하여 외국환(수출입 등)거래약정서와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타 해당 거래별 약관 또는 약정서가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 제4조 국문본의 우선

본 약정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 수입거래에 관한 팩시밀리 신청 약정서 신규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약관변경일자 : 2013.11.01		
<p><b>제2조 면책 등</b></p> <p>(1) 은행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팩시밀리 신청서의 원본을 징구하거나 그 존재사실을 거래처로부터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은행이 팩시밀리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 또는 서명을 거래처가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수입거래에 관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은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인장이나 서명의 도용,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u>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u></p> <p>(2) 거래처는 팩시밀리 신청에 따른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해당 팩시밀리 신청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u>그 원본의 존재 및 증거능력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항변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u></p>	<p><b>제2조 면책 등</b></p> <p>(1) 은행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팩시밀리 신청서의 원본을 징구하거나 그 존재사실을 거래처로부터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은행이 팩시밀리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 또는 서명을 거래처가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수입거래에 관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은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인장이나 서명의 도용,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u>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중대한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u></p> <p>(2) 거래처는 팩시밀리 신청에 따른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해당 팩시밀리 신청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p>	<p>은행의 고의 중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사항 포함</p> <p>고객의 항변권 제한하는 극단적 표현 삭제</p>